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0000-제0호, 폐기물 처리 관련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 조사 요구(시정권고)

신 청 인 배00 외 2
대구 북구 000로0길 0-00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0000과장

- 주 문 1. 피신청인은 0000. 0. 00. 대구 북구 000로0길 0-00의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의 이행을 협조 요청한 통보를 철회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의 조치명령과 함께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관련 별표 8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을 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통지할 것을 시정요구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도 같은 길 0-00의 토지소유자가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1과 신청 및 예비적으로 주문 2와 같은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0000. 0. 00.

위원 000 _____

위원 000 _____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대구 북구 000로0길 0-00(00동0가 000-0)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0000. 0. 00. 화재가 발생하여 벽체를 제외한 이 민원 주택이 전소된 바 있으나, 이 민원 주택의 화재 발생 시 타다 남은 각종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같은 길 0-00(00동0가 000-0)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신청인(들)이 4차에 걸쳐 구청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을 소유자가 계속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하여 신청인(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0000. 0. 00. 대구 북구 000로0길 0-00의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공유한 0인의 소유자(이하 ‘이 민원 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0000. 0. 00.까지 쓰레기의 수거 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이 민원 토지소유자에게 협조 요청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청결유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은 없고, 아울러 신청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은 0000. 0. 00. 00:00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조(목조)와 달리 벽돌조로 시공된 벽체 및 대문 측 스라브 지붕을 제외하고 전소(全燒)된 이 민원 주택의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주택의 건축개요

위 치	대구 북구 000로0길 0-00	소 유 자	이00 외 0
대지면적	00㎡	건축면적	00.00㎡
연 면 적	00.00㎡	구조 및 용도	목조/와즙, 영업용
규 모	지상0층	사용승인일	0000. 00. 00.

나. 이 민원 주택에는 0000. 0. 00. 강제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이○○의 부부가 0000. 0. 0.부터 약 00년을 거주하였고, 대구 북구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이○○은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경제능력이 없다.

다. 신청 외 00동장은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 대한 화재발생 보고 시 이 민원 주택에 다량의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보고한 후 0000. 0. 00. 이 민원 주택 주변의 도로에 방치된 폐기물의 잔재를 통장협의회 등 각 단체의 회원과 환경미화원이 합동으로 정리를 완료하였다.

라.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은 00㎡로 이 민원 토지를 공유한 0인 중 0인이 이 민원 토지의 각 0분의 1(00㎡×0/0=00.00㎡)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1인(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자의

남동생 이○○)은 대구 00구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그 외 0인이 나머지 0분의 0($00\text{m}^2 \times 0/0 = 00.00\text{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폐기물의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마.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이 민원 주택의 북측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변의 상당수 주민들이 이 민원 주택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가오는 봄철 및 여름철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폐기물의 부패에 따른 악취는 물론 해충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바.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4차에 걸쳐 구청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였음을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구청을 방문한 사실을 없음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사. 이 민원 주택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던 신청인(들)은 0000. 0. 00. 우리 구「0000년도 제1기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통해 0000. 0. 00. 사전 상담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폐기물의 처리 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은 같은 날 이 민원 토지소유자에게 0000. 0. 00.까지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적정 처리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아. 이 민원 주택의 주변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0000. 0. 0. 대구 00경찰서(형사과)에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대구북부경찰서는 이 민원 주택에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현장감식이 종료되어 폐기물의 반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유선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있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등

- (1)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14.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별표 8 붙임 1 참조). 이와 관련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6.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은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두거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생략) 4.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과 함께 피신청인이 정한 이행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 관련 별표 8 제2호 나목에 따른 1차 위반 과태료 000,000원을 부과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0000. 0. 00. 이 민원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협조 요청을 하여 이 민원 토지소유자가 피신청인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행정조치가 불가하므로, 피신청인이 재차 청결유지에 관한 조치

명령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도록 한 처분의 흠결이 인정된다(붙임 2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참조).

*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으나, 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2008. 6. 22. 시행)된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 후 과태료를 부과·징수

(2)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대집행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청결 유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0000. 0. 0.부터 약 00년을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자는 대구 북구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경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이 민원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의 처리 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이유로 폐기물의 처리를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이 민원 주택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폐기물의 부패에 따른 악취는 물론 해충이 발생하여 인접한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④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고충민원을 피신청인이 소극적으로 처리할 경우 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의 침해를 이유로 한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점, ⑤ 이 민원 주택에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다가오는 봄철 및 여름철에 전염병이 발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 ‘4의 나. (1)’의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도 이 민원 토지소유자가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이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0000-제0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등 요구(시정권고)

신 청 인 박00
대구 북구 00로 00-00, 000호(00동0가)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00과장

주 문 피신청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북구 00동 1가 000-0 0000어린이집 및 같은 동 000-0 0000유치원의 전면도로인 00로0길 (차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상시 다수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 민원 도로를 내년도 불법주차의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가급적 0000. 00. 00. 이전 위 도로에 불법주차 단속용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취지와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0000. 0. 00.

위원 000 _____

위원 000 _____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북구 00동1가 000-00 소재 0000 어린이집 및 같은 동 000-0 소재 0000유치원(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 등’ 이라 한다)의 전면도로인 00로0길의 차로(이하 ‘이 민원 도로’ 라 한다)측 가장자리에 상시 불법주차를 하는 다수의 차량으로 인해 이 민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도로의 교통흐름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주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도로의 불법 주차 행위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단속용 고정식 감시카메라(이하 ‘감시카메라’ 라 한다)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on)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이 민원 도로 주변의 지역여건상 전면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기 어려워 출·퇴근 시간대 이 민원 도로의 특정구간(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에 한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위 내용이 포함된 「0000년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이 민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원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어린이집

등의 등·하원 시간대 이동식 차량으로 이 민원 도로의 특정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반 문제점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나, 소요예산의 확보 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설치할 수는 없고, 피신청인이 내년도 감시카메라 설치 대상지의 선정 시 이 민원 도로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감시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도로는 편도 1차로 및 그 차로의 양측을 보도로 조성한 너비 15m의 도로이고, 이 민원 도로의 남측에 위치한 이 민원 어린이집 등은 대구 북구 00동1가 000-00의 토지를 사이에 두고 그 서측 같은 동 000-0의 토지에는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0000. 0. 00. 보육정원 000명으로 설치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지상0층 연면적 0000.00㎡ 규모의 0000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그 동측 같은 동 000-0의 토지에는 대구 00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0000. 00. 00. 설립인가¹⁾를 받아 현 정원 000명으로 운영되는 지상0층 연면적 0000.00㎡ 규모의 0000유치원(사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다.

나. 신청 외 대구지방경찰청장은 0000. 0. 0. 이 민원 도로의 구간 중 00로0길 0에서 같은 길 00까지의 구간을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신청 외 대구광역시장은 같은 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1)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인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규칙」 제3조에 따라 0000유치원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약 300m의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이 민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은 소규모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대구 북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이 없음에 따라 이 민원 도로 주변의 공장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승용차 등이 이 민원 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상시 불법주차를 하여 이 민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이 민원 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 민원 도로 주변의 지역여건상 불법주차의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은 출·퇴근 시간대 이 민원 도로의 특정구간(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에 한하여 불법주차의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0000년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피신청인이 금년도 특정구간에 대한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사실은 없음에 따라 이 민원 도로는 사실상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과 같이 이용되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 (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이하 생략)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4. (생략)”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하 생략)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한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은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감안하여 이 민원 도로를 불법 주차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되, 출·퇴근 시간대 특정구간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신청인이 금년도 이 민원 도로의 특정구간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음에 따라 사실상 이 민원 도로를 전면적인 불법주차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특정구간 외 불법주차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립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계획은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민원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취지에 반하는 점, ③ 이 민원 도로 주변에 소재한 공장의 근로자 등이 이 민원 도로를 사실상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 민원 도로 외 다른 도로가 없는 이 민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④ 이 민원 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상시 불법주차를 하는 다수의 차량으로 인해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도로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구 00경찰서장 등에게 이 민원 어린이집 등이 위치한 차로의 일방(一方) 구간을 시간대별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등의 협의를 거쳐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⑥ 피신청인이 내년도 이 민원 도로를 불법주차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법주차로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포함한 이 민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점, ⑦ 피신청인이 이동식 차량에 의한 불법주차를 단속할 경우 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해당 차량의 운전자간 심한 마찰이 예상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를 내년도 불법주차의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가급적 0000. 00. 00. 이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를 불법주차의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